

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

• 어두운 난()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일자	처리기간	일
신고인	건축주			
	전화번호			
	주소			
대지위치				
지번				
※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번을 적으며, 「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·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장소가 지번이 없으면 그 점용·사용 허가를 받은 장소를 적습니다.				
허가(신고)번호		허가(신고)일자 년 월 일		
신고내용	연장 존치기간 년 월 일까지			
	연장사유			

「건축법 시행령」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건축주
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신고안내				
제출하는 곳	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, 시·군·구	처리부서	건축허가(신고) 부서	
첨부서류	없음			수수료 원
근거법규				
「건축법 시행령」 제15조의2 제2항	•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때에는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의 경우 존치기간 만료일 14일전까지,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의 경우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.			
처리절차				
신고서 작성 신고인(건축주)	→	접 수 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, 시·군·구(건축허가·신고 부서)	→	검 토 결 재 신고필증 작성 신고필증 교부 신고인(건축주)